

HYUNDAI MOBIS CODE OF CONDUCT FOR BUSINESS PARTNER

현대모비스 협력회사 행동강령

 DO THE RIGHT THING -
COMPLIANCE FIRST!

HYUNDAI MOBIS Business Partner Code of Conduct



Table of Contents

01

인권·노동 5 Human Rights·Labor

인권보호정책
노동관계법 준수
차별금지

04

윤리 8 Ethics

반부패
이해상충 방지
공정거래
정보보호
위조부품 방지
수출통제 준수

02

안전·보건 6 Safety·Health

산업안전
비상상황 대응
산업재해·질병예방
보건관리

05

합법적 원자재 취득 9 Responsible Sourcing

분쟁광물

서문 4

03

환경 7 Environment

환경규제의 준수
오염 예방·자원 및 에너지 절감
환경영향물질의 관리

06

경영시스템 10 Management System

준수의지 표명
담당자 선임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
리스크 평가 및 관리
개선 목표
교육 및 의사소통
임직원 피드백 및 개선
문서화 및 기록
고충처리제도 운영
협력회사 관리
행동강령 준수

서문

현대모비스는 모빌리티의 혁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인류사회의 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혁신적 마인드와 기술로 시장을 선도해 나갈 뿐 아니라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좋은 평판과 신뢰를 받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글로벌 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본 행동강령은 회사의 확고한 컴플라이언스 경영 의지를 계승하여, 우리의 협력회사들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유지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현대모비스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환경·사회·거버넌스 기준(ESG Standard)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본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협력회사가 그들의 거래업체 등 공급망 전반에 대해서도 본 행동강령을 적용하기를 권장합니다.

현대모비스의 모든 협력회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 운영과정에 있어 본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대모비스 및 현대모비스의 위탁을 받

은 제3자 기관은 협력회사가 본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모비스는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회사는 개선사항에 대해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 완화 계획 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본 행동강령은 협력회사의 이행 의무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강령은 현대모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대모비스 담당부서를 통해 본 행동강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윤리 준수에서부터 사회적 책임 실천에 이르기까지, 본 행동강령 준수를 통해 현대모비스와 우리의 협력회사가 더욱 존경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고객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무한히 키우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기를 기대합니다.



01

인권·노동 Human Rights·Labor

원칙

협력회사는 모든 구성원·관계자의 인권을 존중·보호하고
어떠한 부당한 차별도 하지 않으며,
UN의 세계인권선언 및 이행원칙 등 국제 인권기준·규범과
각 국가별 노동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인권보호정책

협력회사는 모든 업무수행 및 제품·서비스 제공 전
반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UN 세계인권선언 및 회사의 인권보호정책
에 따라 노동력 착취 및 비자발적 고용을 금지하며,
여기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근로, 노예제도·인신매
매를 포함한 정신적·신체적 구속에 따른 강제노동
등 비인도적 행위 일체가 포함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을 금지해야 하며, 피해 임직원
과 가해 임직원에게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
니다. 이러한 원칙은 협력회사의 임직원 뿐 아니라
협력회사의 사업파트너 등 협력회사의 사업·투자활
동 전반에 적용됩니다.

노동관계법 준수

협력회사는 임직원들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무하
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
계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리를 보
장하고 노동조합 가입 및 결성, 활동을 이유로 불이
의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임직원의 고용 및 해
고, 근무시간,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수당, 사회보험
가입, 휴식/휴가 제공 의무 등은 각국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차별금지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
고 다른 생각이나 관점·신념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포용력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임직원 고용 시 인종·피부색·종교·나이·성별·혼인상
태·출신국가·정치적 견해·사회적 신분·장애 여부 등
어떠한 이유로도 누구든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급여·복리후생·진급·징계 등 고용 및
근로조건에서 어떠한 부당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02 안전·보건 Safety·Health

원칙

협력회사는 안전·보건과 관련한 각국 제반 법규 및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사업장 유지·관리 및 임직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직·계획·절차를 갖추고 점검 등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사고가 우려되는 관행이나 상태를 발견한 경우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담당자는 위험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즉시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산업안전

협력회사는 유해물질·소음·분진 등의 위험을 사전 예방·관리하며, 작업환경 정기 평가를 통해 적절한 위험예방조치를 설계·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한 작업장 설계 및 위험예방조치·안전수칙에 따른 작업수행·보호장비 제공·지속적 안전교육 등을 통해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비상상황 대응

협력회사는 안전·보건 관련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로, 유도등, 화재 감지기·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질병 예방

협력회사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보고·유형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및 원인 제거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체계 및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보건관리

협력회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을 제공 시, 청결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 제공 시, 안전표지, 조명, 냉난방 등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 적절한 외부인 출입제한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별 건강검진 법규에 따라 임직원 건강검진을 정기 실시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작업공간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합니다.



03 환경 Environment

원칙

협력회사는 환경보호 관련 제반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 및 친환경 기술개발 등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 수행을 통해 사업활동 전반에 걸쳐 걸쳐 생태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력회사는 조직·계획·절차를 갖추고 점검 등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환경규제의 준수

협력회사는 자원의 사용, 폐기물 처리, 환경영향물질 배출 및 관리 등 일련의 환경 이슈와 관련한 규제 요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환경법 및 환경정책에 근거한 생산활동 및 사업운명을 통해 환경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오염 예방·자원 및 에너지 절감

협력회사는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중금속, 폐수 및 폐기물 등 환경영향물질 배출 최소화과 전력·연료·수자원 소비 절감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품의 설계·제조·유통·사용 및 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공정개선, 원료 대체, 재활용·재사용, 친환경 제품·소재 개발 등에 노력해야 합니다.

환경영향물질의 관리

협력회사는 지정폐기물을 포함하여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저장·운반·사용·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재해 및 사고로 인한 유해물질 유출 시 환경관리담당자 및 관계기관에 즉시 제보하여야 합니다.



04 윤리 Ethics

원칙

협력회사는 각 국가별 부패방지 법규를 준수하며, 이해관계자에게 모든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부정한 청탁·청탁 수락 및 이익 요구·수수·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협력회사 임직원은 이해상충 행위를 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며, 국가별 독점금지·공정거래 관련 제반 법규 준수 및 투명한 거래,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반부패

협력회사는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뇌물이나 리베이트의 제공·수수를 금지하며, UN 부패방지협약 및 각 국가의 반부패 관련 법률 등을 준수하고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거래는 회계장부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해상충 방지

협력회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제 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 받는 일체의 행위를해서는 안됩니다.

공정거래

협력회사는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체의 공동·담합행위 및 부당이득 추구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보 보호

협력회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모든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 및 보안을 요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공유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조부품 방지

협력회사는 미승인 또는 위조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사용·판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위반사항 발생 시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수출 통제 준수

협력회사는 수출제한 또는 경제제재 관련 국가별 법규 및 국제 규약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해야합니다.



05 합법적 원자재 취득 Responsible Sourcing

원칙

미국·EU를 포함한 각국의 분쟁광물 규제를 준수 해야 하는 협력회사는
공급망 전체에 유통되는 원자재의 출처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자재가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이거나, 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
재정지원 또는 도움을 주는 국가로부터 취득되지 않았음을 보증·관리하여야 합니다.



분쟁광물

분쟁광물이란 아프리카 분쟁지역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요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쟁광물 판매 자금이 지역 내 무장세력으로 유입되고 채굴과정에서 인권유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OECD Due Diligence Guidance’를 기반으로, 분쟁광물 사용에 있어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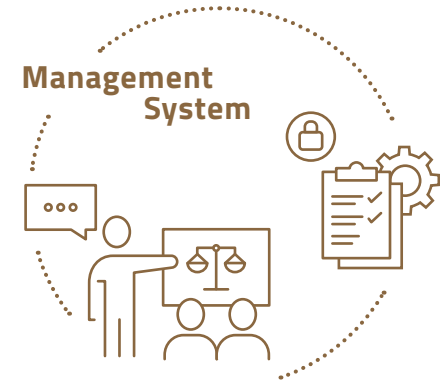
이에 현대모비스의 협력회사 또한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CFS(Conflict Free Smelter)인증 취득 및 해당 인증을 취득한 제련소와의 거래 원칙이 포함됩니다. 현대모비스는 필요 시 당사에 납품되는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사슬 내 위험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대모비스는 협력회사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06 경영시스템 Management System

원칙

협력회사는 현대모비스의 「협력회사 경영시스템」을 채택하고
관련법과 본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리스크 최소화과 지속적 개선을 위한 경영제도를 이행 및 유지해야 합니다.



준수의지 표명

협력회사 경영진은 본 행동강령의 준수 책임자로서
준수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해야 합니다.

담당자 선임

협력회사는 사회적 책임 활동 관련 계획수립과 이
행현황을 감독하는 관리자와 담당 실무자를 선임해
야 합니다.

리스크 평가 및 관리

협력회사는 인권노동·안전보건·환경·윤리·기타 준
법 측면의 리스크를 확인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개선 목표

협력회사는 인권노동·안전보건·환경·윤리·기타 준
법 측면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현황을 주
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임직원 피드백 및 개선

협력회사는 본 규범에 대한 직원의 이해도를 평가
하고 관련 피드백 및 위반사항을 접수하여 지속적
개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문서화 및 기록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및 사내 보안규정에 따라 해
당 문서와 기록을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 요건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처리하는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교육 및 의사소통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회사의 정책·기대사항 및 성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임직원과 공급업체 및 고객에 공유해야 합니다.

고충처리제도 운영

협력회사는 제보채널을 구축·운영하고 제보자의 익명성 및 정보의 비밀유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위반행위 제보와 관련한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협력회사 관리

협력회사는 하위 협력회사에게도 본 행동강령의 준수를 요구하며, 준수 여부를 평가평가를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 또는 리스크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거나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행동강령 준수

협력회사는 현대모비스 또는 현대모비스가 지정한 제3자가 진행하는 정기적인 서면점검 또는 현장방문 평가 시에 본 행동강령 준수 여부 및 이행 수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 운영에 대한 실제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된 적절한 문서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본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서면점검 혹은 현장방문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함이나 위반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문서번호	준법경영팀-2020-124-1
제정일자	2019.10.10
개정일자	2020.06.25
개정번호	1

담당자	승인자
준법경영팀 김도연	기획부문장 정수경

※전자결재



본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연락처
compliance.officer@mobis.co.kr



HYUNDAI
MOBIS

